

사 업 연 도	. . . ~	최저한세조정계산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

① 구 분		코드	② 감면 후 세 액	③ 최저한세	④ 조정감	⑤ 조정 후 세액
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		01				
소 조 정 금 액	⑩② 익 금 산 입	02				
	⑩③ 손 금 산 입	03				
⑩④ 조정 후 소득금액 (⑩① + ⑩② - ⑩③)		04				
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특 별 비 용	⑩⑤ 준 비 금	05				
	⑩⑥ 특별상각 및 특 례자산 감가상각비	06				
⑩⑦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(⑩④ + ⑩⑤ + ⑩⑥)		07				
⑩⑧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		08				
⑩⑨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		09				
⑩⑩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(⑩⑦ + ⑩⑧ - ⑩⑨)		10				
⑩⑪ 이 월 결 손 금		11				
⑩⑫ 비 과 세 소 득		12				
⑩⑬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비 과 세 소 득		13				
⑩⑭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익 금 불 산 입 · 손 금 산 입		14				
⑩⑮ 차 가 감 소 득 금 액 (⑩⑩ - ⑩⑪ - ⑩⑫ + ⑩⑬ + ⑩⑭)		15				
⑩⑯ 소 득 공 제		16				
⑩⑰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		17				
⑩⑱ 과 세 표 준 금 액 (⑩⑮ - ⑩⑰ + ⑩⑯)		18				
⑩⑲ 선 박 표 준 이 익		24				
⑩⑳ 과 세 표 준 금 액 (⑩⑱ + ⑩⑲)		25				
⑩㉑ 세		19				
⑩㉒ 산 출 세 액		20				
⑩㉓ 감 면 세 액		21				
⑩㉔ 세 액 공 제		22				
⑩㉕ 차 감 세 액 (⑩㉒ - ⑩㉓ - ⑩㉔)		23				

2.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

⑩㉖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 료 연 월		⑩㉗ 유예기간 종료 후 연 차			
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㉔란부터 ㉑란까지, ㉒란 및 ㉓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, ㉑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 부표]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또한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㉑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㉔란부터 ㉑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㉑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때 작성방법 1~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㉑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
※ 예 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㉑ 결산상당 당기순이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
- ②란 중 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㉒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㉑ 조정 후 소득금액란: ②, ③,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, 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㉑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, 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㉑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.
- ②란과 ③란 중 ㉑ 기부금한도초과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㉑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②란과 ③란 중 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부인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㉑ 해당 사업연도 손금부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⑧ 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㉑, ㉒, ㉓부터 ㉑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㉑, ㉒, ㉓부터 ㉑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산출세액란: ㉑란의 금액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②란 중 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②란 중 ㉑ 선박표준이익이 ②란 중 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※ 최저한세 세율

구분	중소기업 (유예기간 4년 포함)	유예기간 경과 후		일반기업		
		1~3년차	4~5년차	과표 1백만원 이하	과표 1백만원~1천만원 이하	과표 1천만원 초과
현행	7%	8%	9%	10%	12%	17%
중전	7%	8%	9%	10%	12%	16%

* 2014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

- ②란 중 ㉑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㉑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 - ②란 중 ㉑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㉑란(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)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,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④란 중 ㉑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㉑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 - ⑤란 중 ㉑, ㉒, ㉓, ㉔, ㉕란은 각각 ④란 중 ㉑, ㉒, ㉓, ㉔, ㉕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.
 - ⑤란 중 ㉑, ㉒란은 각각 ②란 중 ㉑, ㉒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㉑, ㉒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- ⑤란 중 ㉑ 차감세액은 ③란 중 ㉒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- ㉑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(4년)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'사업연도 연월'과 같이 적습니다.

※ 예: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. 12. 31. 경우,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'2011. 12'로 적습니다.

- ㉑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㉑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~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, 2, 3, 4,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